

“외자3법”상 외상투자기업의 비교

실무상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외자기업이고, 그 다음은 중외합자 기업입니다. 아래에서는 외자3법에 따라 설립되는 3가지 외상투자기업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합니다.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, 당해 국가에서 허용되는 기업의 각 유형 별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.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통상 체크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중외합자기업, 중외합작기업, 외자기업을 비교하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.

비교항목	중외합자기업	중외합작기업	외자기업
투자자구성	최소 1 인의 외국 투자자와 1 인의 중국 투자자	좌동	외국 투자자
법적형태	유한책임공사	유한책임공사 또는 비법인조직	좌동. 단 실무상 절대다 수는 유한책임공사
외국투자자 지분비율	100% 미만 - 일반적으로 25%이상(미달 시 이익배당 세율상 불이익 등), - - 단 100%는 불가능	좌 동	100%
투자자의 책임부담 방식	투자자는 출자의무를 한도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부담	-유한책임공사형: 좌동. -비법인조직: 투자자는 연대책임 부담	좌동
설립시 인허가절차	아래 3 가지는 공통 - 상무부서에의 외상투자신고 - 시장감독관리부서에의 법인 설립 등기 - 각종 후속등기/등록(외환관리국, 세무국, 재정국, 통계국, 공안국, 세관 등) 다만, 특정산업영역이나 상대방 및 거래의 특성에 따라서는 발전과개혁위원회의 심사허가, 경영자집중신고, 국가안전심사, 국유재산처분에 관한 심사허가, 환경영향평가 관련 심사허가 등이 추가로 필요한데, 이는 case by case 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	좌동	좌동

<p>최장 존속기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상 30 년 - 장려형 및 허용형 업종의 경우 50 년도 가능 	<p>좌동</p>	<p>좌동</p>
<p>투자금 회수방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익배당 - 지분매각 - 잔여재산분배 - 감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 - 법적형태상 IPO 는 불가능 	<p>좌동 단, 외국 투자자는 잔여 재산에 대한 권리포기를 전제로 중국 투자자에 우선하여 투자회수 가능(중외합작기업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거론)</p>	<p>중외합작기업과 동일</p>
<p>이익배당</p>	<p>회사법상 유한책임공사의 일반적 규율과 달리, 반드시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배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자비율과 다른 비율로 이익배당 가능. - 현금 아닌 형태로도 이익배당 가능 	<p>회사법상 유한책임공사의 일반적 규율에 따라서, 출자비율과 다른 비율로 이익배당 가능</p>
<p>지분양도 요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도인 및 양수인간 지분양도계약 - 다른 투자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, 이사회 결의 - 설립시 관여한 정부기관(상무부서, 시장감독관리부서 및 기타 관할 허가기관)이 다시 관여함 	<p>좌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도인 및 양수인간 지분양도계약 - 투자자 결의서 - 설립시 관여한 정부기관(상무부서, 시장감독관리부서 및 기타 관할 허가기관)이 다시 관여함
<p>청산시잔여 재산분배</p>	<p>합자계약서나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, 출자비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</p>	<p>좌동 단, 외국투자자가 잔여 재산포기를 전제로 자신의 투자를 중국투자자에 우선하여 회수한 경우 전부 중국투자자에게 분배</p>	<p>중외합작기업과 동일</p>

<p>의결권 행사방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주총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, 이사회가 최고이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- 이사회 구성비율을 출자비율과 다르게 할 수 있음(이를 통해 출자비율과 다르게 의결권 설정 가능) - 출석이사 만장일치사항: 정관변경, 해산 및 청산, 증자 혹은 감자, 합병 혹은 분할. - 기타사항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정관에서 결정(통상 출석이사의 과반수 의결) - 이사회 의사정족수: 이사전원의 2/3 출석 요구 - 이사회 대리 출석 가능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각 투자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음. - 주주총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, 이사회가 최고이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- 출석이사 만장일치사항: 좌동, 단 회사영업을 제 3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역시 만장일치 필요 -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. - 이사회 대리출석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법상 유한책임공사의 일반규율에 따라 주주총회, 이사회, 감사회 모두 설치. 단 소규모일 경우 1 인의 집행이사만 두고 이사회는 두지 않을 수 있음 - 의결권이 각 투자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음. - 이사회 대리출석 가능
---------------------	---	---	---